

# “공공 SW사업 법제도 바로알기” 카드뉴스

- 01 SW 분리발주 제도
- 02 대기업참여제한 및 사업금액하한의 적용
- 03 하도급 제도
- 04 작업장소 상호협약
- 05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및 개발 SW공동활용 사전명시
- 06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07 **특정규격 명시 금지 및 제안서 보상여부 명시**
- 08 협상의 의한 계약 우선적용 및 기술평가 중심의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09 요구사항 상세화
- 10 적정사업기간 산정
- 11 투입인력 관리 금지
- 12 SW사업정보 제출



공공 SW사업 법제도 바로알기 카드뉴스

07-1

특정 SW규격의 명시,  
지정, 공정한 것인가요?

특정규격 명시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 입찰공고

SW 개발 시  
SW는 OO기업의  
OO로 한정

— XX 발주 기관 —

아니 우리OO제품도  
조건을 맞출 수 있는데!

오픈소스도 있고,  
OO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것 같은데

SW사업자 A

SW사업자 B

공고서에 나온  
OO제품이  
아니라 입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제품으로도  
기술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기능도 더 좋고, 저렴해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해주세요!!



특정한 규격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경쟁을 통해 기술&가격 두 가지  
모두를 챙길 수 있는데...  
○○업체랑 관계된 것 아닌가?

오픈소스 쓰면  
예산도 아끼는데...

○○가업



따라서 발주기관 등에서는  
입찰서류 작성시 도입제품의 규격  
등에는 특정한 회사나 제품의 명칭,  
상표나 기술규격, 성능 등을 명시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통규격으로  
작성하셔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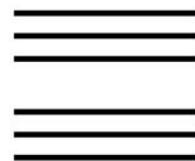
특정규격 명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입찰서류 규격에 반영하려면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



오호라 이런  
공정한 제도도  
있었군!

특정규격



## 01 특정 규격의 명시 금지

물품의 제조 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품질·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이 납품 되더라도 특정 상표·모델이 아니라는 사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OO제품이 아니잖아요!  
납품 거부!

아니...이런 경우가



“공공 SW사업 법제도 바로알기” 카드뉴스

07-2

힘들게 만든 제안서,  
국가기관에서 무단사용된다니  
문제있는것 아닌가요??

제안서 보상여부 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낙찰에 떨어진  
A업체 제안서 보니  
내용을 가져다  
쓸게 많은걸?!



낙찰에 떨어진  
A업체 제안서

우수한 내용의  
제안서인데  
그냥 공짜로  
활용해야지!

아니 아쉽게 낙찰도  
받지도 못했는데  
제안서를 무단으로  
활용하다니...

낙찰에 떨어진  
A업체 제안서

발주기관

A업체

## 02 SW사업 제안서 보상

SW사업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가 너무 좋아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용하셔도 됩니다.



## 03 제안서 보상 여부의 명시

20억 이상 SW개발사업은 제안서 보상에 관하여 '보상을 하는지' 또는 '보상을 하지 않는지' 여부를 입찰서류(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주기관에서 제안서 보상을 한 경우, 보상받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 동의 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다만, SW 개발사업이 아닌 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구축, HW/SW도입 등 사업은 대상에 해당안됨

제안서에 대해  
보상함 / 보상하지 않음



보상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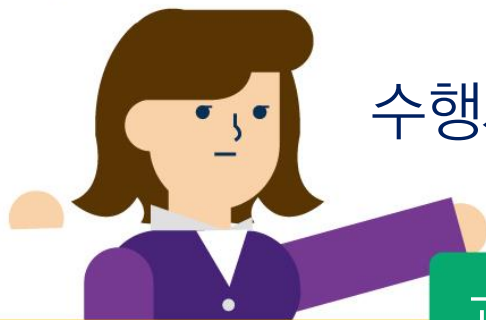


활용  
가능

“특정규격 명시 금지 및 제안서  
보상여부 명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당한 SW경쟁 환경 조성, 저작권 침해 예방

SW품질향상, 정당한 보상 문화 형성, 저작권 보호



수행사업자



발주기관

관련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공정한  
SW사업 환경  
조성!

더 좋은  
SW로  
보답하겠습니다.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로  
신뢰할 수 있는 SW개발문화 확립!

#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SW강국으로의 도약!”



“공공 SW사업 법제도 바로알기”  
카드뉴스 콘텐츠 자세히 알아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Copyright ©2017 nipa, All rights reserved.

본, 콘텐츠에 사용된 서체는 한국출판인회의의 Kopub서체를 사용하였습니다.